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38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박용갑 · 윤준병 · 조인철
박상혁 · 정준호 · 박희승
이해식 · 진성준 · 허 영
박홍배 · 조승래 · 이연희
소병훈 · 이성윤 · 윤종균
안태준 · 복기왕 · 노종면
김용만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호출 성공률·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

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운송플랫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의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운행기록장치와”를 “운행기록장치,”로, “택시요금미터를”을 “택시요금미터 및 운송플랫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택시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같은 법 제49조의19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사업자별 호출건수, 호출요금, 배차시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출을 요청 받

은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9. (생략)</p> <p>③ ~ ⑧ (생략)</p> <p>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u>운행기록장치</u>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u>택시요금미터</u>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p>	<p>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운송플랫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의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 ----- ----- ----- -----<u>운행기록장치</u>,----- -----<u>택시요금미터</u> 및 <u>운송플랫폼</u>----- ----- ----- -----</p>

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신설>

-----.

② -----

-----.

이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한 정보를 택시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같은 법 제49조의19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사업자별 호출건수, 호출요금, 배차시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출을 요청 받은 해당 사업자는 정당

④ (생략)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
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